

덴마크의 축산물가공품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상 진

머 리 말

먼저 축산물 가공식품의 관리업무가 사육단계에서부터 도축까지는 농림부 소관사항으로 하고, 그 이후의 가공(육가공, 유가공), 유통, 판매까지는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으로 1985. 7. 1 결정되어 이원화된 것을 금번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다시 농림부로 환원하여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쇠고기를 제외한 돼지고기, 닭고기 및 머리, 족, 꼬리 등 식용설육이 '97. 7. 1부터 완전 수입개방된다고 한다. 이러한 수입개방 일정에 우리축산업을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생산비를 절감시켜 나가는 것이다.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방법은 많은 요인을 말할 수 있다. 즉, 가축방역을 통한 생산비의 절감, 축산시설의 개선을 통한 생산비의 절감을 먼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유통질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수입되는 축산물과 시장바닥에서 경쟁하는 길일 것이다.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는 신제품의 개발과 위생적인 육류의 공급길을 터는 것이다. 위생적인 육류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사랑받도록 하기 위하여는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도축, 가공, 유통, 판매의 전 단계가 그 특수성으로 보아 축산물 위생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에 의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새삼 필자가 "덴마크의 축산물 가공품관리업무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선진외국은 동물유래 모든 축산물은 일반농산물이나, 식품과는 달리 생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위생검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어떤 품목을 어떤 규정에 의거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는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작년 11. 24~11. 28일 덴마크 농수산부를 방문하여 조사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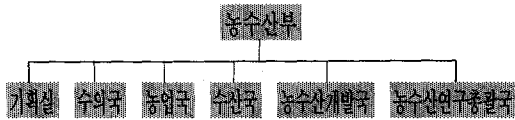
2. 덴마크의 농수산부의 조직

덴마크의 농수산부는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번째 국으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Danish Management and Intervention Board)으로 이곳에서는 총무, 행정관리,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다. 두번째 국은 축산, 수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의국(Danish Veterinary Service)이며, 세번째 국은 농산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국(Danish Plant Directorate)이다. 네번째 국은 수산물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산국(Danish Directorate for Fisheries)이며, 다섯번째 국은 농수산개발국(Danish Directorate for Development in Agriculture and Fisheries)으로 농업과 수산업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분야의 연구에 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농수산연구 총괄국(Danish Secretariat for Agriculture and Fisheries Research)이다. 수의국 산하에

※ 농림부 축산국 가축위생과

는 수의연구소(Danish Veterinary Laboratory)와 수의바이러스연구소(Danish Veterinary Institute for Virus Research)가 있다.

표 2-1. 덴마크의 농수산부 조직표



3. 덴마크 수의국의 조직

덴마크에서 축산·수의분야를 총괄하며, 축산업의 발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농수산부산하의 수의국(Danish Veterinary Service)이다. 이 수의국에서의 주요업무는 덴마크내의 축산관련 분야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주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도축·도계검사 업무와 수산물의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축산물의 가격 및 수급과 관련한 업무는 앞에서 설명한 기획국(Danish Management and Intervention Board)에서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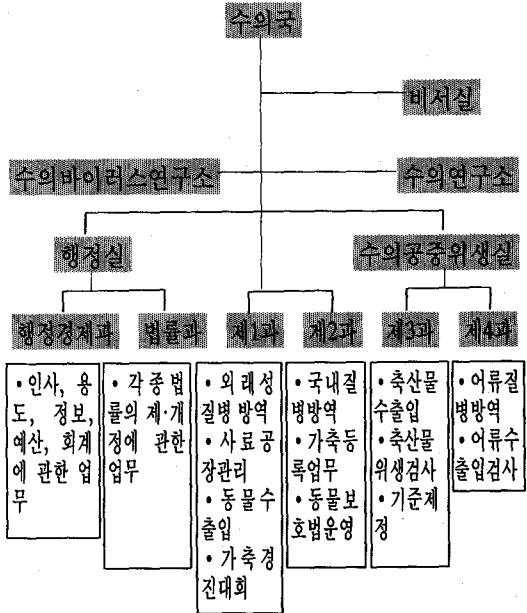
이 수의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가축위생과 복지에 관한 업무, 동물에서 유래하는 전식품, EU에서 위임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품질에 관한 법률(Quality Act)"이 개정되어 1994년 9월부터 수산물의 검사와 생산에 관한 업무가 수의국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의국산하에는 12개의 수의지방검사청이 설립되어 이곳에서 실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의연구소와 수의바이러스연구소가 수의국산하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각종 가축전염병의 방역과 인수공통전염병을 Control하고 있다. 또한 EU로 수출하는 동물, 어류, 축산물, 수산물의 검사는 9개 수의지방검사청에서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검사청에서 검사를 담당하는 수출 품목으로는 육류, 우유, 유제품, 마가린, 계란, 계란가공품 등이 있다.

수의국산하 공무원의 정원은 약 1,205명으로 본부에 160명, 지역사무소 및 도축장 근무 900명, 국경 검

역관련기관에 65명이 근무하고 있다.

덴마크 수의국(본부)의 조직과 주요수행업무는 표 3-1과 같다.

표 3-1. 덴마크 수의국의 조직과 주요 수행업무



4. 덴마크 수의국에서 하는 일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실장 아래에는 행정경제과의 법률담당과가 있다. 행정경제과는 인사계, 서비스계, 정보기술계, 예산계, 회계계가 있는데 인사계는 직원의 임명사항을 담당하고 시설과 장비의 관리, 문서수발, 현금출납, 구매, 전화교환, 출장관리 등은 서비스계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계는 정보기술의 개발과 구매, 교육훈련과 지원,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 컴퓨터시스템의 관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지출법, 보조지출법에 따라 국내의 지출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고 경제적 평가를 담당하는 예산계와 직원의 급여지급, 수수료의 징수 등은 회계계에서 담당하고 있다.

법률담당과는 유럽연합(EC) 위원회에서 제정된 지침(Directive)에 의거 덴마크의회를 통과한 법령에 따라 제

정하는 시행령과 규칙의 제·개정에 대한 실무와 수의국 내의 다른 부서 특히 제1과 및 제2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수의보건의위원회(Veterinary Board of Health) 및 수의전문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 of Veterinary Specialists) 사무국의 업무를 지도감독 하며, 덴마크에서 활동중인 외국 수의사의 관리와 EU 규정의 편찬에 관한 일도 담당하고 있다.

표 3-1의 수의국 수의국장 직속으로 제1과와 제2과가 있는데 각 과에서 수행중인 업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2. 수의국장 직속 담당과(제1과 및 제2과)의 주요업무 분장내용

1과(과장:Dr. Susanne Ammendrup)	제2과(과장:Dr. Jorgen Flensbur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성 질병의 발생상황 감독 ■ 산동물, 정액, 수정란, 어분, 수산물 함유사료의 EU역내 수출입과 관련한 업무(어류 제외) ■ 가축의 재상산, 유통, 가축 경진대회, 동물원관리 ■ 동물지방제거공장, 애완동물사료공장, 어분공장, 수산사료공장, 동물약품회사 등을 관리 ■ 수의사의 면허관리 ■ 축산분뇨 등 환경과 관련한 업무 ■ 가축관련 유전자기술의 관리 ■ 수생양식동물 및 그 산물의 관리 ■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질병 관리프로그램 개발 ■ 수생양식동물 질병에 관한 농수산부의 자문위원회 지도·감독 ■ 수의약품의 처방, 유통, 사용의 감독 ■ 잔류물질 및 약제투여에 따른 휴약기간의 설정 ■ 조제동물약품, 호르몬제, 기타 불법, 부정유통 수의약품 감시·감독 ■ 수의백신위원회(Veterinary Vaccine Committe)의 사무국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제류동물, 토끼, 가금류의 질병방역 ■ 중앙가축등록소(Central Livestock Register) 관리업무 ■ 돼지 및 가금에 대한 살모넬라 방역 및 박멸 프로그램 관리 ■ EU의 인수공통전염병 Directive의 실행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실행내용의 EU위원회 보고 ■ 동물의 수송, 양계장, 돼지와 송아지 사육 등을 관리 ■ 동물보호법(Act on protection) 및 개 관련법(Dog Act)과 관련한 기술적 조언 ■ 야생동물 및 여우에 관한 법률 운영

다음은 앞의 직제표에서 설명한 수의공중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표 3-2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실상 아래에 2개과가 있는데 제3과의 제4과로 칭하고 있다.

표 3-3. 수의공중위생실장 산하 담당과(제3과 및 제4과)의 업무분장내용

제3과(과장:Dr. Flemming Nielsen)	제4과(과장:Dr. Birgitte Povls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육, 가금, 어류, 우유, 유제품, 계란, 기타 동물 유래 식품의 생산(food stuff animal origin), 출하, 수출입에 대한 법안 관련 준비작업 ■ 동물기원식품에 관한 규정(regulation), 권고(precept), 지침(guideline)의 제·개정 ■ EU·UN, 노르딕회의(Nordic council) 내의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이나 제3국과의 쌍무협정과 같은 식품법안과 관련된 국제적인 포럼의 준비 ■ 식품의 생산, 출하, 수출입과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과의 협조 ■ 수출검역증명서의 준비 ■ 세정제와 살균제의 승인 ■ 수출업체에 대한 외국 식품 관련법률 정보 유통서비스 ■ 잔류물질검사기준 및 방법 관련 조항의 제·개정 ■ 동물유래식품의 상표부차 ■ 덴마크 Codex위원회의 사무국 및 Codex에 대한 덴마크 내의 Contact-po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유래식품의 생산, 판매, 수입과 관련된 업체(일부 종류의 어선 포함)의 허가, 승인 및 등록 ■ 일부 축산물의 수출검역증명서 발행 ■ 민간 실험실(검사소)의 승인 ■ 오염 및 최소 잔류물질 관리 ■ 유통업 관리 ■ 동물유래식품의 국제적, EU역내 교역에 대한 관리 ■ 정부승인업체 근무 수의공무원과 지방정부 식품검사소(Food Control Unit)와 연락업무 ■ 관리 및 검사업무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의 조정 ■ 유기식품(organic food)의 유통관리에 대한 조정과 감독

5. 덴마크 수의국에서 운용중인 법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덴마크 수의국의 업무는 동물에서 유래된 모든 식품과 어류에 대한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이들 식품의 수출입에 관한 업무도 동시에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일까를 살펴보자.

덴마크의 법령체계는 가장 먼저 EU directive(지침)가 있고 그 directive에 따라 국내법(Act)이 제·개정된다. 각부의 장관은 법에 따라 order를 제·개정하며 산하국장은 order 또는 guide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덴마크 농업부 수의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령은 무엇인가?

가축의 사육단계에서 관리되고 있는 가축방역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동물방역법」(Act No. 814 of 21 December 1998 on Animal Diseases)

- Ministry of Agriculture order no. 914 of December 1987 on Rabies
- Ministry of Agriculture order no. 397 of 1 July 1988 on instruction for the veterinary police on Rabies
- Ministry of Agriculture order no. 319 of 1 July 1980 on bovine Tuberculosis
- Ministry of Agriculture order no. 320 of 1 July 1980 on bovine Brucellosis
- Veterinary Service order no. 221 of 21 April 1993 on bovine Tuberculosis in deer
- Veterinary Service order no. 268 of 22 April 1992 on Salmonellosis and isolation of Salmonella bacteria in animals
- Veterinary Service order no. 1022 of 15 December 1993 on examination for Salmonella and control and prevention of *S. Enteritidis* and *S. typhimurium* in hens
- Veterinary Service order no. 789 of 21 September 1992 on rendering of offal and on production of feed-stuffs with contents of animal origin

○ 우유 및 유제품, 마가린 등에 관한 법으로 Act No. 342 of 15 May 1992 on Milk, Milk products, Margarine 등이 있으며 그 세부지침은 다음과 같다.

- Veterinary Service order no. 902 of 29 November 1993 on milk products
- Veterinary Service order no. 626 of 14 July 1992 on egg products

○ 참고로 일반 식품위생과 관련된 법으로는 “식품 등에 관한 법”(Act No. 310 of 6 June 1973 on Food ect)이 있는데 이 법은 보건부에서 운용하며 육류, 우유 등과

관련한 축산물 가공식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의 생산 시설과 도매 및 소매점에 대한 일반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

- Ministry of Health order no. 368 of 27 June 1974 on authorization of premises manufacturing food-stuffs or food additives. Latest amendment order no. 886 of 22 November 1993
- Ministry of Health order no. 367 of 27 June 1974 on approval of wholesale business of food-stuffs. Latest amendment order no. 887 of 22 November 1993
- Ministry of Health order no. 121 of 28 March 1980 on retail sale of food-stuffs. Latest amendment order no. 888 of 22 November 1993
- National Food Agency Circular No. 159 of 22 August 1994 on microbiological examinations of food-stuffs

6 인수공통전염병의 관리내용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업무는 농수산부와 보건복지부가 상호 협력하여 처리하고 있다. 전문조직(수의사)로 구성된 농업부에서 그 업무를 주도하고 병원에서 확인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원인을 찾고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수공통전염병을 다루고, 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 소매단계에서만 비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 생산부터 소매단계까지 위생통제를 관장하고 있다.

인간에게 인수공통전염병의 전염은 보건성 산하 보건원(Board of Health)과 그곳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인 국립혈청연구소(National Serum Institute)가 담당하며 지역별로 인수공통전염병은 전국 15개지역에 있는 보건원 소속 의무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한편 농수산부는 동물의 측면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을 다루고 도축장, 집유장, 계란포장장, 사료공장 등의 위생통제를 담당하고 있다.

동물에게 인수공통전염병의 전염은 수의국의 가축위생을 담당하는 제2과와 산하의 국립수의연구소(Natio-

nal Veterinary Laboratory)에서 담당하고 식육 및 유란의 인수공통전염병은 공중위생실과 산하의 덴마크 수의국 식품연구소(Danish Veterinary Service Food Control Laboratory)에서 수행하고 있다.

농업국은 살모넬라균을 검사하기 위한 사료공장의 위생지도·감독 및 사료생산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하여 국립수의연구소내에 인수공통전염병센터(Danish Zoonosis Center)를 설립하여 농수산성과 보건성의 각 기관이 협력하는데 보건성의 보건원, 국립혈청연구소, 국립식품청(National Food Agency)과 농수산성의 농업국, 수의국, 국립수의연구소에서 센터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물의 인수공통전염병은 12개 지역의 수의사가 담당하고, 식육의 인수공통전염병은 각 도축장의 공수의사가 담당하는데 이들 수의국 소속직원이거나 수의국의 지시를 받고 있다.

맺 음 말

이상으로 우리는 “덴마크의 축산물 가공품관리업무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을 파악하였다. 사실 축산물은 그 특성상 인수공통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식품과는 다르다.

그래서 전문인인 의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다. 덴마크 수의국의 업무소관중 중요한 것이 어류검사업무까지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은 가히 전문집단이 관리하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수산식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또한 영양가가 높은 고단위 식품이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해서 다루지 않으면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덴마크는 조금이라도 축산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위생관리에 대한 책임이 전부 농수산부의 수의국으로 되어 있다. 사육에서 도축, 가공, 유통, 판매까지 전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하여도 이러한 행정조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에 부딪치게 된다.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일도 있고, 잘못된 일도 있고, 잘된 일도 있다. 잘못된 일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일이야말로 중요할 것이다. 그 하나의 좋은 예가 축산물 가공식품의 관리 권한을 1985. 7. 1 농림부 소관업무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업무로 변경한 것을 금번 1997. 2. 28 19:00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농림부 소관으로 다시 환원한 일이다.

이러한 결정이야말로 우리 수의·축산인, 소비자, 가공업에 중사하시는 모든 이에게 정말로 희소식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앞으로 이러한 결정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열심히 각종 법률의 개정작업에 참여하고자 한다.

관련법률이 개정되어 축산물 가공식품관리 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되면 질 좋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노력하여 개방화 시대에 소비자가 원하는 축산식품을 생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 축산업을 성장산업으로 발전되도록 하는 길이다.

이상으로 “영국의 축산물 가공품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가”라는 주제에 이어 “덴마크의 축산물가공식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논제를 가지고 서술하였다. 미흡한 본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데 대하여 필자로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영국, 덴마크를 방문하고 96. 12. 1-12. 4까지 일본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